

「평창군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」

## 심 사 보 고 서

### 1. 심사경과

- 제안일자 및 제안자: 2023년 6월 1일, 평창군수 제출
- 회부일자: 2023년 6월 12일 회부
- 상정일자: 제286회 평창군의회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 
(2023년 6월 12일 상정·의결)

### 2. 제안설명의 요지 (제안설명자: 세정과장)

#### 가. 제안이유

‘고향사랑기금’ 설치 및 재원을 표시하여 기금 관리·운영적 측면의 효율성을 확보하고, 답례품 공급 사무 위탁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근거를 마련하여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.

#### 나. 주요내용

- 가.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재원(안 제2조)
- 나.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 위원회(안 제6조~제15조)
- 다. 답례품 선정위원회(안 제19조~20조)
- 라. 답례품 공급의 사무 위탁(안 제24조)
- 마. 기부자에 대한 예우(안 제26조)
- 바.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교육·행사 등(안 제27조)

### 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(전문위원: 김영옥)

○ 본 조례안은

현행 조례를 통한 고향사랑 기부제 운영과정에서  
도출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,

○ 주요내용으로는,

고향사랑기금을 명시하고 관련 사항을 세심히 규정하였으며,  
답례품 공급 사무의 위탁 및 기부자에 대한 예우 조문을 신설함.

○ 검토결과,

고향사랑 기부제의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운영과  
기금의 지속적인 관리를 추진하기 위하여  
조례를 전부개정 하는 것으로,  
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의결

7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